

회원연수교육

# 동산 · 채권 담보등기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 머리말

어려운 현실인데도 국가공인 자격자로서 법무사의 품위를 유지하려고 애쓰시는 경기북부법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법무사 윤리강령”의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신설된 제도인 동산담보법이 시행(2012. 6. 11.)되고 있는 현재, 그 등기절차에 관해 궁금해 하는 대다수 회원의 건의에 따라, 부족하나마 소생이 집필한 교재를 우리회원 모두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6월 26일(火) 대한법무사협회 강의실에서 서울동부법무사회(회장 조태익) 주최로 소생이 맡아 실시한 강의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대한법무사협회 및 경기북부법무사회의 각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사오니 참조바랍니다.

다만 강의내용 중 담보등기의 등록면허세는 금7,200원이 아니라 담보금액의 1/1,000로 바뀌었습니다(지방세법28조1항5의2 新設). 부족하나마 본 교재가 동산담보등기의 실행에 참고가 되어 회원의 사무실운영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전부개정 “신탁법”이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예정인데, 회원님들의 건의여부에 따라 신탁등기에 적용되는 점에 관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집필내용도 공개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북부법무사님!

비록 현실의 어려운 여건이지만 법무사제도는 115년의 역사와 더불어 결코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몸조심하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뵙는 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2012년 7월 4일

경기북부법무사회 회장 신현기 올림

# 동산담보법에 따른 등기

2012. 7. 2. 法務士 申鉉基 修正

## 목 차

### I. 개념

#### 1. 담보물과 공시방법

- 가. 동산담보법과 입법배경
- 나. 동산담보의 공시방법
- 다. 담보목적물
- 라. 공시방법과 설정자
- 마. 동산담보법의 적용불가
- 바. 각국의 입법례

#### 2. 동산담보제도의 성질

- 가. 민법상 담보물권의 준용
- 나. 동산담보제도의 특성
- 다. 특성의 해설
- 라. 담보권의 공시효력

#### 3. 채권담보권

- 가. 지명채권
- 나. 제3채무자에게 통지

### II. (동산·채권)담보등기의 절차

#### 1. 총설

- 가. 개념
- 나. 부동산등기의 준용
- 다. 담보물의 특정방법
- 라. 담보권의 존속기간

#### 2. 담보권설정등기

- 가. 관할 및 신청방법

나. 신청정보의 내용

다. 첨부정보

라. 등기실행

3. 담보권의 이전, 변경(경정), 말소, 연장

### Ⅲ. 상호신설등기

1. 신청서 기재사항

2. 첨부서면

### 법 례

- ①동법(동산담보법)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12.6.11.시행  
법률10366호와 개정법)
- ②동시행령 ; 동산담보법 시행령(대통령령)
- ③동규칙(동산담보규칙) ; 동산·채권의 담보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④법(신법) ; 부동산등기법(11.10.13.시행 전부개정 법률10580호)
- ⑤규칙 ; 부동산등기규칙(11.10.13.시행 전부개정 대법원규칙)
- ⑥예규 ; 대법원 등기예규
- ⑦선례 ; 대법원 등기선례(요지집1권~ 8권과 이후의 선례)
- ⑧공광저당법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舊공장저당법과 舊광업재단저  
당법을 통합 09.3.25.시행의 법률9520호와 개정법)
- ⑨등수칙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⑩입목법 ; 입목에 관한 법률
- ⑪자동차등저당법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⑫자본시장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舊증권거래법, 舊  
선물거래법,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舊신탁업법의 4  
개를 통합하여 09.2.4.시행 법률8635호와 개정법)
- ⑬자산유동화법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⑭본안집행 ; 09년 법률서원 申鉉基저 “이론실무 본안집행 상하”
- ⑮담보법해설 ; 10년 법무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I. 개념

### 1. 담보물과 공시방법

#### 가. 동산담보법과 입법배경

①動産擔保의 方法 ;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의 특별법인 동산담보법이 시행(12.6.11.)되기 전에 민법(불문법 포함)상 동산(유체동산과 채권)의 담보방법은 ㉠질권(質權 ; 민법329조), ㉡양도담보(讓渡擔保 ; 관례로 인정된 비전형적 변칙담보), ㉢채권담보(債權擔保) 등이지만, 다음(②)의 문제점 때문에, 기업자(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의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제공에서, 채권자(금융회사 등)는 위 동산담보방법보다는 공시(등기)로 물권효력(우선변제)이 있는 부동산담보를 선호한다.

②問題點과 登記의 必要性 ; ㉠질권은 채권자(담보권자)에게 담보물의 점유이전이어서 채무자(담보권설정자)소유의 기업설비를 담보물로 삼지 못하는 단점이고, ㉡양도담보는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기되 채무자점유(점유개정 방법)의 장점이지만, 담보물의 공시방법이 불확실하여 이중양도에 따른 분쟁발생의 가능성이며, ㉢채권담보는 대항요건(확정일자 문서통지 또는 제3채무자승낙)이 필요하여(민법 450조) 장래의 다수채권을 일괄담보로 제공은 어렵다. 따라서 동산소유자(담보권설정자)의 자금조달원활이려면 동산담보권도 부동산처럼 등기의 공시로 물권효력발생이 요청된다.

③立法經過와 施行 ; 위 요청에 따라 동산담보법이 ①정부안으로 국회에 발의되어(09.11.3.), ②제289회 임시국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의결로(10.4.29.), 제290회 전체회의 통과(10.5.19. 재석의원 165인 중 찬성162, 반대2, 기권1) 후, ③공포로 제정되어(10.6.10. 법률 10366호), ④공포 2년 후인 2012. 6. 11.부터 시행이므로, 동법시행 후 체결된 담보약정부터 적용된다(동법1조, 2조1호, 부칙2조).<sup>1)</sup>

1) 擔保約定의 時期 ; 양도담보설정은 채권자에게 점유개정방법으로 담보물인 동산을 인도하고 채무자가 목적물의 직접점유지만, 대외적인 제3자와의 관계에서 채무자는 동산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다. 따라서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와 다시 양도담보설정이라도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선의취득(민법249조)이 인

## 나. 동산담보의 공시방법

①動産擔保의 方法과 效力 ; 이제 동산담보법시행 후부터 유체동산목적의 담보제도는 ㉠민법상 질권설정(민법331조, 332조), ㉡판례상의 양도담보설정,<sup>2)</sup> ㉢특별법(㉣선박법, ㉤입목법, ㉥공광저당법, ㉦자동차등저당법)에 따른 저당권설정, ㉧동산담보법에 따른 담보권설정 등이며, 이들 효력의 우열은 설정의 선후에 따른다(동법7조3항 참조).<sup>3)</sup>

②登記簿 ; 유체동산목적인 등기부의 존재여부는 위 ㉠㉡는 등기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중 ㉣㉤㉥과 ㉧는 등기부(부동산등기부 아닌 별도의 등기부)가 존재하며, ㉦은 등기 아닌 등록절차다.<sup>4)</sup> 즉 위㉣은 선박등기부(선박법8조, 선박등기법1~5조), ㉤은 입목등기부(입목법12조), ㉥은 공장재단등기부와<sup>5)</sup> 광업재단등기부(공광저당법28조, 29조, 54조), ㉧는 동산담보등기부 등이며, 유체물 아닌 채권담보권의 등기를 위해 별도로 채권담보등기부가 있다(동법2조8호).

## 다. 담보목적물

동산담보법상 담보물(담보권의 객체)은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이다.

---

정되지 아니하므로(대판07.2.22. 06도6686[1] 前端), 결국 뒤의 채권자는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데(㉣대판04.12.24. 04다45943[1] ㉤대판04.10.28. 03다30463 ㉥대판05.2.18. 04다37430[1] ㉦대판07.2.22. 06도8649[2]), 동법시행 전의 양도담보설정계약까지 동산담보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면 무효인 후행양도담보계약이 유효화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 2) 擔保物, 優先辨濟 ; 집합물전체(제품, 원자재 등)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양도담보권설정도 가능하다(대판88.12.27. 87누1043[가]). 양도담보약정서가 공정증서이면 강제경매실시도 가능한데 담보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다(㉣대판94.5.13. 93다21910[가] ㉤대판99.9.7. 98다47283[4] ㉥대판05.2.18. 04다37430[2]).
- 3) 擔保權의 名稱 ; 담보권 명칭은 위㉢는 저당권이고 ㉧는 담보권이다.
- 4) 特定動産 ; 자동차등저당법이 적용되는 특정동산은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 소형선박(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인, 소형어선(총톤수 20톤 미만), 모터보트(수상레저안전법30조에 따른 등록) 등과, 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 항공기(항공법에 따른 등록) 등이다.
- 5) 工場抵當 ; 한편 재단을 구성하지 않은 공장에 속해있는 개개의 부동산과 유체물(부가물, 설치물, 공용물)의 담보제공인 공장저당목록제출(공광저당법6조)에 따른 등기는 부동산등기부(법14조)에 기록될 뿐이어서 별도의 등기부가 없다.

①有體動産 ; 유체동산은 특정(종류, 보관장소, 수량지정 등의 방법)가 능한 1)원자재, 2)재고재산, 3)제품, 4)유동성 집합물(돼지, 소, 닭, 개, 염소, 양식어패류 등) 등인데(㉔), 유동성 집합물의 양도담보에서 번식에 따른 장래취득의 집합물에도 담보효력이 미치는 판례(㉕)를 감안하여 장래취득의 동산도 담보목적물에 포함시켰다(동법3조2항).<sup>6)</sup> 종래 이들 유체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공증하던 관행이었으나, 동산담보법시행 후 등기로 공시되어 물권적 효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②指名債權 ; 채권은 금전지급목적의 지명채권으로서 채권종류, 발생원인과 일자 등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동법2조3호, 34조). 채권종류별 구체적인 채권특정의 방법은 후술(Ⅱ.1.다.)한다.

③知的財産權 ; 지적재산권은 이미 등록되어 특정(종류, 대상 등)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반도체배치설계권 등 가운데 법률로 질권설정이 가능한 경우다(동법2조4호, 58조).<sup>7)</sup>

④多數의 擔保物 ; 위①②③은 각 등기 등록의 장부가 달라 각 별도의 공시방법이지만, 동일한 공시방법 내에서 ①②는 등기신청 당시의 담보권설정자별로 구분하여 담보등기부를 작성하므로(동법47조1항), 담보목적물인 ①동산 또는 ②채권이 다수라도 각 담보권설정자 마다 1개의 등기부만 존재한다.<sup>8)</sup> 따라서 동산 또는 채권이 각 여럿(다수의 담보물)이라도, 각 담보권설정자별로 구분된 ①동산담보등기부 또는 ②채권담보등기부 별로 각 1개의 등기목적물이지 공동담보가 아니다. 그러나 이미 등록부가 존재하는 ③지적재산권에서는 각 지적재산권의 등록부별로 동일 등록부내에서는 각 지적재산권의 공동담보다(동법58조).

## 라. 공시방법과 설정자

6) ㉔대판03.3.14. 02다72385 ㉕㉖대판04.11.12. 04다22858[1] ㉗대판07.2.22. 06도8649[1] 등

7) 채권종류와 지적재산권은 拙著 “본안집행(상)” 462쪽과 678쪽 參照

8) 登記簿의 編成 ; 부동산등기는 물적편성이어서 1물1등기원칙이지만(법15조1항), 동산담보등기는 예외적인 인적 편성주의의 채택인데, 완전한 인적편성주의는 아니다(私見). 왜냐하면 이미 동산담보권설정 후 동일한 담보권설정자라도 별도의 담보물이면 별도의 등기고유번호가 부여되어 별도의 등기부가 생성되기 때문이다(동규칙10조 參照).

①公示方法 ; 위 담보권의 공시방법으로 동산과 채권은 등기소에 “동산담보등기부”와 “채권담보등기부”를 두어 각 등기부상 공시지만(동법2조 8호), 지적재산권은 등록기관(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미 존재하는 “등록부(특허원부, 상표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저작권등록부 등)”에 공시여서(동법58조) 등기 아닌 등록이다.

②擔保權設定者 ; 동산과 채권에 대한 담보권설정등기 당시 담보권설정자는 법인 또는 상호등기의 개인이라야 한다(동법2조5호).<sup>9)</sup> 따라서 상호등기를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자기 소유의 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담보권설정등기가 불가능하다.<sup>10)</sup> 그러나 담보권설정등기 후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말소라도 이미 설정된 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유효하다(동법4조).<sup>11)</sup> 다만 상호등기말소 이후에는 담보권설정자라도 새로운 담보권설정은 불가능하다.

#### 마. 동산담보법의 적용불가

다음의 물건은 동산담보등기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①登記 登録 ; ㉠선박등기법상 등기된 선박, ㉡자동차등저당법상 등록된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소형선박, ㉢공광저당법상 등기된 기업재산(공장재단, 광업재단), ㉣다른 법률로 등기 또는 등록된 동산 등은 당해공시(등기, 등록)로 대세적 효력발생이면서 충분하므로 동산담보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다.

②有價證券 ; 유가증권(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등)이 작성된

9) 商號登記 ; 상호등기라야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상호의 변경 등이 담보등기부에 반영되어 담보등기부의 공시(검색, 열람 등)가능이기 때문이다. 한편 상호등기(상업등기규칙30조)는 비용부담이지만 동일상호의 제한만이어서 상호등기는 실질적으로 사업자등록자와 동일하여 동산담보비용에 지장이 없다(담보법해설 10쪽, 29쪽, 31쪽).

10) 登録簿 ; 한편 지적재산권의 소유자는 이미 지적재산권의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비록 개인이라도 상호등기 없이 지적재산에 담보권설정등록이 가능하다.

11) 商號抹消 ; 상호등기말소 후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권설정자에게 질문으로 선행 동산담보권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명시 의무(동법6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정자가 선행담권을 숨기면(비록 사기죄의 성립은 가능하지만) 후행담보권이 1순위로 설정되는 중복등기의 가능성이 문제점이다(私見).

동산은 그 증권인도가 동산인도와 동일한 효력발생이므로(상법133조, 157조, 861조), 증권인도와 경합하여 혼란가능한 담보등기를 허용할 필요가 없고 당해증권이용의 금융가능이어서 대상에서 제외다.

③證券的 債權 ; 무기명채권증서는 증권채권(채권이 증권에 화체되어 있어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 양도에 증권이 필요한 채권)이고, 증권으로만 채권처분가능이므로(민법523조, 346조) 대상에서 제외다. 또한 유동화증권(자산유동화법2조4호)과 자본증권(자본시장법4조)도 대상에서 제외인데(동법3조3항, 동시행령2조) 이런 증권은 설사 실물발행이 없어도 증권과 동일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 바. 각국의 입법례

①美國 ; 미국은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의 담보거래 규정(Secured Transactions)이 개정(01.7.1.시행)되어, 동산담보와 채권담보 외에 점유질, 동산저당, 조건부매매 등 다양한 담보제도가 있다.

②英國 ; 영국은 회사법(Company Law)에서 변동하는 기업의 현재와 장래의 재산(동산포함)에 포괄적으로 담보권설정의 내용인 부동담보제도(Floating charge)를 규정하고 있다(담보법해설 17쪽 이하).

③獨逸 ; 독일은 일찍이 양도담보(비점유동산담보권)제도를 학설판례로 인정하면서 동산담보권의 통일화(등기등록)에 소극적이다.

④日本 ; 일본은 동산 및 채권양도법(98년 제정 04년 개정)을 시행하면서 담보권설정자를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⑤中國 ; 중국은 물권법(2007년 제정)에서 유동적이고 불특정의 기업재산전체(생산설비, 원재료, 반제품, 재고품 등)에 포괄적 저당권설정의 규정과 파종후 예상되는 미래농산물에도 저당권설정의 규정이다.

## 2. 동산담보제도의 성질

### 가. 민법상 담보물권의 준용

민법의 특별법인 동산담보법상 인정되는 담보목적물(㉠동산, ㉡채권,

㉔지적재산권)에 각 공통적으로, 양도가능의 재산이라야 하고(민법331조), 소멸부종성(민법369조) 등 민법상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통유성(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을 포함하여 다음의 성질이 있다(동법33조, 37조, 61조, 동규칙56조).

- ①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동법8조)
- ②담보권의 불가분성(동법9조)
- ③담보물의 부합물과 종물에도 담보권효력이 미침(동법10조)<sup>12)</sup>
- ④피담보채권의 범위로서 원본과 이자 등(동법12조)
- ⑤담보권의 부종성 및 수반성(동법13조)
- ⑥담보권의 물상대위성(동법14조)<sup>13)</sup>
- ⑦담보물 외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변제가능(동법15조)
- ⑧물상보증인의 구상권(동법16조)<sup>14)</sup>
- ⑨담보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동법18조)
- ⑩담보물의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동법20조)
- ⑪담보권실행은 민사집행법의 준용(동법21조~ 24조, 동규칙55조)
- ⑫공동담보와 배당, 후순위자의 대위(동법29조)

#### 나. 동산담보제도의 특성

동산담보(㉔동산 ㉔채권 ㉔지적재산권)제도는 민법상 담보물권(저당권 등)과 달리 다음의 특성인데, 이하 ①~④는 ㉔에만, ⑤는 ㉔㉔에만, ⑥이하는 ㉔㉔㉔에 공통의 특성이다(동법37조, 61조).

- ①동산담보물의 현황조사(동법17조1항)
- ②동산담보물의 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동법19조)

12) 制限 ; 다만 특약이나 합성물공유(민법257조 後文 ; 부합물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동산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격비례로 합성물공유)의 제한이 있다.

13) 供託 ; 한편 채권담보목적의 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면 담보권자의 청구로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담보권이 존재하는 규정(동법36조2항)도 같은 맥락으로 본다.

14) 求償權 ; 채무자에 대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민법인정의 독립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상 일반채권규정이 적용된다(대판01.4.24. 01다6237).

③동산담보권자의 목적물점유 및 인도청구(동법25조), 이때 담보권설정자가 수취한 과실에도 담보권효력이 미침(동법11조)<sup>15)</sup>

④동산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동법32조)

⑤담보등기부를 담보권설정자별로 작성하므로(동법47조1항), 관할등기소 역시 담보권설정자의 소재지(동법39조)

⑥피담보채권의 최고액만인 근담보의 가능(동법5조, 47조2항7호)

⑦담보물상 권리존재여부에 관한 설정자의 명시 의무(동법6조)

⑧담보물의 원상회복 및 보충(동법17조2항)

⑨담보권실행방법으로 민사집행법상 경매 외에 사적실행방법인 목적물로서 직접변제(직접청구) 및 후순위권리자에게 청산금지급(동법21조, 23조, 24조, 26조, 36조, 동규칙55조)

⑩담보권자의 매각대금 등의 공탁(동법27조)

⑪피담보채무의 변제로 담보권실행의 중단(동법28조)

⑫담보권존속기간의 연장등기 등록(동법38조, 49조)

#### 다. 특성의 해설

동산담보등기의 특수성(민법상 담보물권과 다른)만 살펴본다.

①根擔保 ; 종전(구법142조의2)에 근담보의 권리질권과 채권담보등기가 불가능했지만 신법의 명문규정으로 가능하듯이(신법76조), 동산 또는 채권담보등기부에도 근담보등기가 가능하다(동법5조, 37조).

②明示義務와 現況調査 ; 담보권설정자가 명시 의무(동법6조)를 위반하여 권리관계를 감추면 사기죄이고, 동산담보권설정은 담보목적동산의 소유권공시도 아니며 담보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담보권설정등기의 동산이라도 선의취득이 가능하며(동법32조), 처분권(소유권 등)이 없는 자가 설정한 동산담보등기는 설사 담보권자가 선의무과실이라도 동산담보권이 없으므로,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가치유지

15) 交換價値 ; 원래 동산담보등기의 목적은 교환가치의 지배여서 원칙적으로 점유자인 채무자에게 목적물의 과실(果實)수취권이 있는데 그 예외다.

를 점검확인(동법17조1항)의 필요하다(담보법해설 42쪽, 62쪽).

③物上代位 ; 민법상 담보물권의 물상대위권인은 목적물멸실, 훼손, 공용징수만이나(㉒), 동산담보권(동산, 채권)에서는 매각과 임대를 물상대위권인에 포함시켰다(㉓). 입법취지는 채무자가 파산에 임박하여 담보목적물의 임의처분에도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주려는 목적에서다. 한편 민법상 물상대위권행사와 동일하게 동산담보의 물상대위권행사이려면 압류선행이라야 하는데 그 압류는 타인의 압류도 포함되며(㉔), 강제집행이 아니어서 집행권원도 필요 없지만(㉕), 담보권실행절차로서 담보권의 존재증명으로 압류라야 한다(㉖).<sup>16)</sup>

④擔保權의 私的實行 ; 담보권(동산, 채권)의 실행은 민사집행법의 절차(동법22조) 외에 사적실행도 가능하다(동법21조2항, 36조, 37조). 사적실행이란 정당한 이유(목적물가격에 비해 법원경매비용의 불합리, 법원경매 말고도 공정가격의 산출가능 등)가 있으면 담보권자는 취득정산 또는 처분정산으로 담보권실행이다. 다만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담보권실행의 약정과 그 제한규정(동법31조)이 있고, 담보권자의 위법한 담보권실행에 대한 이해관계인(동법2조10호)의 청구로 법원의 실행중지가처분제도가 있다(동법30조).

⑤善意取得 ; 동산담보등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의 선의취득가능규정(동법32조)의 취지는, 만일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통상적인 동산거래시마다 동산의 양수인은 언제나 동산등기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시간낭비 및 거래안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sup>17)</sup> 다만 위 선의취득 때문에 동산담보권의 효력이 약화되어 그 대책으로 담보물 점검과 원상회복 또는 담보제공청구권이 인정된다(동법17조).

16) ㉒민법370조, 342조 ㉓동법14조, 37조 ㉔㉕대판96.7.12. 96다21058[1] ㉖대판98.9.22. 98다12812[3] ㉗대결92.7.10. 92마380[가] ㉘㉙대판94.11.22. 94다25728[가] ㉚대판02.10.11. 02다33137 ㉛대판10.10.28. 10다46756[1]

17) 取得對象 ; 동산의 선의취득대상은 점유가 수반되는 소유권과 질권만이지, 점유가 요건이 아니고 등기로 취득 및 이전되는 동산담보권은 선의취득대상이 아니다.

## 라. 담보권의 공시효력

담보권공시(등기 등록)의 효력에서 다음 ①은 등기가 성립요건이어서 동산인도와 동일효력이고 ②는 등기가 대항요건이다.

①動産擔保 ;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로써 효력이 발생되어, 동일한 동산(또는 채권)에 설정된 동산(또는 채권)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순서에 따르며, 담보권설정인 위 등기와 동산인도(引渡) 또는 채권증권교부(또는 증권이 없는 채권이면 물권행위인 설정약정)의 각 효력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공시방법(등기, 인도, 교부)의 선후에 따른다(동법7조, 37조).

②債權擔保 ;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채권담보권은 성립이지만 담보등기라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되, 제3채무자(지명채권의 채무자)에게만은 등기당사자(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의 통지(동법52조의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방법)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이라야 대항할 수 있다. 한편 동일채권에 관한 등기와 양도통지 또는 승낙(민법349조, 450조2항)의 선후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동법35조).

③知的財産權擔保 ; 약정에 따른 지적재산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한 때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질권의 득실변경등록과 동일효력이 생기며, 동일한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위 담보권등록과 질권등록의 순위는 그 등록의 선후에 따른다(동법59조). 담보권자는 지적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동법60조).

## 3. 채권담보권

### 가. 지명채권

채권담보목적의 채권은 금전지급의 지명채권(指名債權)으로서 채권종류, 발생원인과 일자 등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다수채권 또는 장래발생의 채권도 포함된다(동법2조3호, 34조).<sup>18)</sup>

18) 抵當權附債權 ; 한편 지명채권의 일종인 저당권부채권을 담보물로 삼아 부동산등기부에 채권담보권설정등기의 절차는 채권담보등기부와 별개다(11년 법률서원 발행 신현기 배중국 공저 “부동산등기법 각론” 533쪽 參照).

①金錢債權 ; 채권담보권의 담보목적은 금전채권 만이고, 비금전채권(물건인도 등의 주는채무 또는 하는채무)은 가치환산이 어려워 담보물권으로서 우선변제확보가 곤란하므로 채권담보목적물에서 제외다.

②讓渡可能性 ; 동산담권처럼 채권담보권도 양도가능이라야 담보등기 가능이어서, 양도금지채권인 ㉠부양청구권(민법979조), ㉡연금청구권(공무원연금법32조, 국민연금법58조1항 등), ㉢재해보상청구권(산업재해보상보험법88조2항) 등은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아니다.<sup>19)</sup>

③讓渡禁止의 特約 ; 당사자특약으로 양도금지의 채권이 담보목적물이면 담보권자가 선의라야 채권담보권취득이 가능하다(민법449조2항).

④將來債權 ; 장래채권도 담보가능이므로 채무자(제3채무자)가 특정되지 않은 지명채권이 담보목적물이면, 이후 담보권자 또는 설정자가 특정된 제3채무자에게 담보등기사실의 통지라야 대항할 수 있다. 한편 장래채권의 양도가능요건은 채권의 1)특정가능성과 2)발생가능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가 판례이나,<sup>20)</sup> 채권담보에서는 특정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다. 채권발생가능성을 요구하면 지나치게 담보목적물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담보법해설 27쪽).

#### 나. 제3채무자에게 통지

①通知 및 承諾 ; 채권담보등기효력인 대항요건에서 일반 제3자는 등기로 충분하지만(동법35조1항), 제3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승낙이라야 대항가능(동법35조2항)인 이유는, 지명채권(담보목적물)의 채무자임장인 제3채무자로 하여금 이중변제의 위험을 방지시키려는 배려다.

②通知者 ;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질권설정에서는 설정자만이지만, 채권담보등기에서는 설정자(양수인 포함)와 담보권자도 통지자인데, 이는 담보등기가 공동신청으로 실행되는 점을 감안했고 통지방법이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여서 허위통지가 차단되기 때문이다.

19) 押留禁止 ; 그외 양도 및 압류금지의 채권은 본안집행(상) 84쪽, 475쪽 參照

20) ㉠대판91.6.25. 88다카6358[나] ㉡대판96.7.30. 95다7932[1] ㉢대판97.7.25. 95다21624[2] ㉣대판10.4.8. 09다96069[1]

③通知方法 ; 등기사항증명서교부의 통지방법뿐이지, 일간신문에 공고 특례(자산유동화법7조)는 채택되지 않았는데, 과실 없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불능이면 공시송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민법113조).

④通知效力 ; 통지전의 제3채무자는 담보권설정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변제 등)로 담보권자에게 대항가능이다. 또한 제3채무자가 통지당시 설정자에 대한 상계원인(반대채권 등)이 있다면 아직 상계적상이 아니어도 이후 변제기 도래 등 상계적상이면 상계로 대항가능이다.

## II. (동산·채권)담보등기의 절차

### 1. 총설

#### 가. 개념

①登記對象 ; 등기로 공시된 내용은 제3자에게도 대항가능의 강력한 대세적 효력발생이어서, 등기대상과 등기사항의 명문규정이어야 등기가 가능하다. 등기는 권리객체등기와 권리주체등기로 대별된다. 즉 1)客體 ; 권리객체의 등기부는 부동산등기법 외에 특별법까지 포함해서, ㉠토지, ㉡건물, ㉢선박,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동산담보, ㉧채권담보 등 8개의 등기부이고, 2)主體 ; 권리주체의 등기부는 ㉨상업,<sup>21)</sup> ㉩법인, ㉪유한책임신탁 등 3개의 등기부다.<sup>22)</sup> 여기서는 객체등기로서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의 등기절차다.

②登記事項 ; 등기사항은 부동산등기법(법3조)상 8개의 권리(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지만, 동산담보법상은 오직 담보권만이 등기사항으로서,<sup>23)</sup> 동산담보권 또는 채권

21) 商業登記簿 ; ㉨에는 세부적으로 9개 등기부(상호,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지배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의 존재다(상업등기법5조).

22) ㉠㉡법14조, ㉢선박법8조, 선박등기법1~5조, ㉣입목법1~23조, ㉤㉥공광저당법11조, 54조 ; 한편 등기대상인 기계기구(공광저당법6조의 목록제출)는 별도 공장저당등기부의 존재가 아니고,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각 등기부에 공동담보인 기계기구등의 목록을 기록할 뿐이다. ㉦㉧동산담보법2조8호, 3조, 34조, ㉨상사법인(상업등기법), ㉩민법법인(민법31조 이하)과 특수법인(법인설립가능의 각종 특별법), ㉪신탁법(12.7.26.시행)126조

23) 設定者 ; 담보(동산, 채권)등기부에 설정자별로 담보권설정자가 등기사항으로서 기록되는데(동법47조2항1호, 동규칙11조), 이는 별도로 소유권란(갑구)의 존재가 아니고 담보권

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경정 포함), 말소, 연장에 관해서 동산담보등기부 또는 채권담보등기부에 기록되는 등기다(동산담보법38조). 즉 동산담보법에 따른 등기에는 소유권의 등기가 없다.

#### 나. 부동산등기의 준용

(동산·채권)담보등기절차는 동산담보법의 특별규정이 없는 한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하고(동산담보법57조), 다음처럼 부동산등기절차와 동일내지 유사하다(예규1458호~ 1460호 참조).

- ①법원행정처에 중앙관리소를 두고,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동법40조, 동규칙3조, 6조, 7조)
- ②등기신청은 원칙적 공동신청이며 단독신청의 예외(동법41조)
- ③등기신청의 방법은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의 2가지(동법42조, 동규칙44조, 45조, 48조, 50조~ 54조)
- ④등기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원본환부(동법43조, 동규칙47조)
- ⑤수수료 등 등기신청에 부과된 의무(동법44조, 46조9호)
- ⑥등기신청의 접수, 조사, 각하(동법45조, 46조, 동규칙32조, 49조)
- ⑦등기신청의 취하(동규칙31조)
- ⑧등기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동법47조, 동규칙11조)
- ⑨등기필정보의 작성, 통지, 안전확보, 실효, 제공 등(동법2조11호, 48조, 62조, 동규칙37조~ 42조)
- ⑩등기부의 공개 및 공개제한(동법52조, 동규칙20조~ 26조)
- ⑪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동법53조~ 56조)<sup>24)</sup>
- ⑫등기부의 작성, 보관, 복구 및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보존, 비치할장부의 보관(동규칙8조, 9조, 12조~ 19조)

---

의 등기기록(부동산등기에서 저당권으로서 을구와 동일)에 기록될 뿐이어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아니지만 사실상 담보권설정자가 소유자인 셈이다. 한편 설정자와 별개의 지위(비록 동일인이라도)인 채무자가 따로 등기된다(동법47조2항2호).

24) 異議權者 ; 이의권자는 등기상 직접적 이해관계인에 한정되는 점(대결87.3.18. 87마206), 비송사건절차로 처리 등 부동산등기의 이의절차와 동일하다.

## 다. 담보물의 특정방법

①總說 ;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②③의 방법으로 특정이 원칙이고, 특정에 유익한 사항으로서 ②동산의 명칭, ③채권의 변제기, 제3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록할 수 있다(동법47조2항6호, 동규칙35조2항, 예규1458호6조). 한편 설정등기 후의 등기로서 담보권설정자표시의 변경, 경정의 경우에도 위 특정이 필요하지만(규칙30조 단서), 담보권의 이전, 변경, 경정, 연장, 말소의 각 등기에서는 이미 담보약정별로 부여된 “등기일련번호”만을 기록해도 충분하다(동법45조1항, 동규칙10조, 30조).

②動産 ; 동산은 ㉠특질에 따른 특정과 ㉡보관장소에 따른 특정이 있는데, ㉠은 동산의 종류, 제조번호, 제품번호 등의 방법이고, ㉡는 동일 보관장소에서 동일종류의 전체동산을 담보목적물로 삼을 경우만 가능하고 동산의 종류 및 보관장소의 방법이다(동규칙35조1항1호).

③債權 ; 채권은 ㉢채권의 종류,<sup>25)</sup>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으면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채권발생의 원인 및 일자(또는 시기와 종기),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방법이다(동규칙35조1항2호).

## 라. 담보권의 존속기간

①五年 ; 담보권의 존속기간이 5년인 이유는 ㉦유동성인 동산의 장기 담보는 거래안전의 저해, ㉧소멸부종성(피담보채권의 소멸로 담보권도 소멸) 때문에 상사채권의 대부분이 5년 시효인 점 등의 고려다.

②更新 ; 그러나 기간갱신의 필요성이어서(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의 채권담보인 근담보 등) 횟수 제한 없이 갱신가능이지만, 갱신되면

25) 債權의 種類 ; 담보물인 채권은 1)부동산매매대금, 2)동산매매대금, 3)기타매매대금, 4)부동산 담보대출, 5)금융기관대출, 6)신용카드대금, 7)기타대여금, 8)임대차보증금반환, 9)차임, 10)공사대금, 11)기타 수급인의 보수, 12)수임료, 13)보관료, 14)지료, 15)전세금반환, 16)보험금, 17)보험료, 18)중개료, 19)운송료(운임), 20)리스료, 21)지식재산권이용료, 22)진료비, 23)서비스이용료, 24)기타 등이다(예규1458호6조1항2호 별표 제2호).

원래의 담보순위가 유지되어 이해관계인(후순위권리자 등)의 보호도 필요하므로 기간만료 전에 연장등기라야 한다(동법49조2항).

③同意 ; 원래 존속기간의 갱신(연장)은 권리관계변경의 일종으로서 부동산등기에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요하지만(법57조), 동산담보와 채권담보의 등기에서는 후순위권리자도 갱신을 예상하고 있어 동의나 승낙 없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담보법해설 130쪽). 그래서 변경과 별도로 연장등기를 규정한 것이다(동법38조).

## 2. 담보권설정등기

### 가. 관할 및 신청방법

①登記管轄 ; 동산 및 채권의 각 담보권등기의 관할은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등기소 중 담보권설정자의 소재지(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상호등기의 개인영업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인데(동법39조), 설정자가 외국인이면 대법원소재지관할의 등기소다(동규칙4조).<sup>26)</sup>

②登記申請人 ; 부동산등기처럼 위 담보등기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 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1)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또는 경정)의, 2)의사표시의제판결(민집법263조)의, 3)포괄승계(상속, 법인의 합병 등)의 각 경우는 단독신청이다(동법41조).

③申請方法 ; 동산·채권담보권의 설정등기신청은 방문신청 또는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소정방식의 신청정보(예규1458호5조1항 별표 제2호 양식 중 제1호, 제2호, 제7호, 제8호)를 제공하는데(동법42조, 43조 1항1호),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되 괄호안에 특수문자(로마자, 한자, 부호 등)를 병기할 수 있다(동규칙2조, 예규1459호2조, 3조).

④登記申請에 必要書面 ;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은 신청서와 등기원인증명 등 예규1458호4조를 참조 바라며,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서 동일내용은 1건에만 제출 또는 송신이다(동규칙27조).

26) 管轄의 變更 ; 한편 담보권설정등기 후 관할변경의 원인(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상호등기의 개인 영업소의 이전)에 따른 변경등기가 실행되면 따라서 신등기소로 관할이 변경된다(동규칙5조).

## 나. 신청정보의 내용

위 신청정보는 다음 내용으로서 신청인(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 또는 전자서명(전자서명법2조2호)이다(동법43조2항, 47조2항, 예규1458호5조3항).

①設定者 ;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또는 명칭)로서, 설정자가 ㉠법인이면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 등록번호, ㉡상호등기(상업등기법31조)의 개인이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영업소

②債務者 ;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채무자가 법인이면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sup>27)</sup>

③擔保權者 ; 담보권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

④外國法人 ; 위①②③이 외국법인이면 국내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으면 대표자의 국내주소 ; 동규칙34조)

⑤등기일련번호(다만 담보권설정등기에서는 제외 ; 동규칙30조)

⑥登記原因 ; 담보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⑦登記目的 ; 등기목적은 “동산·채권(근)담보권설정”

⑧目的物の 特定 ; 담보등기의 목적물인 동산 또는 채권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동규칙35조, 예규1458호6조 ; 전술한 1.다. 참조)

⑨被擔保債權 ; 피담보채권의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⑩特約 ;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특약(동법10조 단서 또는 12조 단서)이 있으면 그 약정

⑪存續期間 ; 담보권의 존속기간(전술한 1.라. 참조)

⑫代理人 ; 대리인의 등기신청이면 대리인의 성명[대리인이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이면 그 명칭], 주소(법인이나 조합이면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⑬登記畢情報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 및 승소한 등기

27) 別個 ;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라도 별개지위이므로 기재해야 한다.

의무자의 단독신청이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다만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신청에는 기록하지 않고, 설정등기 이후 담보권의 이전, 변경(경정 포함), 말소, 연장의 경우만 기록함]

⑭賦課義務 ; 등기신청에 부과 의무인 등록면허세액, 신청수수료액

⑮登記所와 日字 ; 관할등기소 및 신청연월일

#### 다. 첨부정보

등기신청에 첨부정보는 예규1458호4조를 참조 바란다.

①添附情報 ; 첨부정보는 1)原因情報 ; 등기원인정보<sup>28)</sup> 등, 2)第三者의許可 ;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또는 동의, 승낙)가 필요하면 그 증명정보 등, 3)代理權 ; 대리인의 등기신청이면 그 권한증명정보 등, 4)當事者の特定 ; 당사자의 특정을 위한 서면(동규칙29조) 등인데 관할등기소에 제공(제출 또는 송신)한다(동법42조, 43조1항).

②賦課義務 및 手數料 ; 동산과 채권의 등기신청에 부과된 의무(동법46조9호) 및 다른 법률규정의 의무사항도 적어야 하고(동규칙28조), 소정의 등기신청수수료(금14,000원)를 납부해야 한다(동법44조, 동규칙5조의3제1항, 5조의2제1항3호).

③登録免許稅 ;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1 상당과 그 20%의 지방교육세다(지방세법28조1항5의2 新設, 151조1항2호).

④住宅債券 ;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등기 중 소유권의 보존, 이전 또는 저당권의 설정, 이전에만 매입하므로(주택법시행령95조1항 별표12 부표19) 동산담보권설정등기에는 매입의무가 없다(선례6-348 參照).

⑤印紙稅 ; (근)저당권설정도 인지세의 명문규정이 없어(인지세법3조 參照),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으므로 종전

28) 擔保約定書 ; 담보권설정등기의 원인정보인 담보약정서에는 ㉠계약당사자인 채권자(담보권자)와 설정자(담보제공자) 외에 채무자, ㉡특정된 담보목적물, ㉢피담보채권(확정금액 또는 채권최고액), ㉣특약(동법10조 단서 또는 12조 단서)이 있으면 그 약정, ㉤담보권의 존속기간 등을 기재한다. 담보약정시 설정자는 1)담보목적물의 소유여부, 2)담보목적물에 대한 다른 권리의 존재유무 등을 담보권자에게 명시할 의무가 있다(동법6조). (동산·채권)담보권설정계약서의 양식을 덧붙임과 같이 예시한다(92쪽~ 94쪽).

선례(선례1-922 後端)는 잘못으로 본다. 따라서 동산담보권설정의 담보약정서에서도 인지세 납부의무가 없다.

### 라. 등기실행

(동산, 채권)담보등기부는 담보목적물인 동산 또는 채권의 등기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담보권설정자 별로 등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담보약정마다 등기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하되(동규칙10조),<sup>29)</sup> 전술(나.)한 등기신청정보의 내용 중 ①~ ⑫호와 접수번호, 접수연월일과 접수시각까지도 기록하며(동법47조, 동규칙33조), 부기등기가능의 별도규정이 없어 주등기로 실행되는데(동법57조), 등기기록의 양식이 마련되어 있고(동규칙11조), 등기부부분자료도 작성되어 손상에 즉시 복구가능이며(동규칙12조, 13조), 신청정보 등도 5년간 보존된다(동규칙14조). 한편 위 설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해야 하며, 등기필정보작성 등의 비밀누설이면 형벌이 부과된다(동법48조, 62조, 64조).

### 3. 담보권의 이전, 변경(경정), 말소, 연장

소유권외권리인 동산담보권 또는 채권담보권도 양도가능의 권리(소유권외권리)여서, 그 권리의 이전, 변경(경정 포함), 말소 등의 등기절차는 (근)저당권의 경우와 동일하므로(동법57조) 일반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연장 등 특이한 규정만을 살펴본다.

①移轉 ; 담보권(동산 또는 채권)은 그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양도(讓渡)불가의 부종성(不從性) 때문에 담보권양도는 항상 피담보채권양도와 결합되어야 하므로(동법13조), 동산담보권이전등기와 별도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민법450조)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등기원인은 “확정채권양도 또는 채권양도”이다(예규1459호5조 별표 제2호 양식

29) 人的 編成 ; 동산담보등기는 비록 인적편성주의를 채택했지만(담보법해설 124쪽), 동일한 담보권설정자가 기존의 담보등기와 별개의 담보목적물(동산, 채권)로 설정이면 기존의 담보등기부 아닌 새로운 담보등기부를 작성한다.

제3호 제9호 참조). 한편 동산담보권은 소유권외권리이므로 그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된다(동법57조, 법52조2호).

②更正 ;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에 오기(誤記)나 누락(漏落)이 있으면 담보권설정자 또는 담보권자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오기나 누락이 등기관이 잘못이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즉 물적편성인 부동산등기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면 그 동의라야 경정등기가능이나(동법57조, 법52조), 인적편성인 담보등기부는 등기관이 이해관계인의 존재를 알 수 없어 이해관계인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경정등기가능으로 규정했다. 이때 경정등기실행은 부기등기 아닌 별도의 주등기로 실행되므로 후순위권자와의 우열은 소송 등의 절차로 해결해야 하며, 담보권자는 경정전의 등기로만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장이 가능하다(담보법해설 135쪽). 또한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부나 상호등기부상 상호,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등기를 마친 등기관(법인등기나 상호등의 담당자)의 통지로 담보등기담당의 등기관은 담보등기부의 해당사항을 직권변경이며, 행정구역 또는 명칭변경에도 직권변경등기다(동법51조, 동규칙36조).

③抹消 ; 말소등기원인에는 1)담보약정의 취소, 해제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 2)담보목적물인 동산이 멸실되거나 채권이 소멸한 경우, 3)그 밖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등이 있으며, 위 원인에 따른 말소등기신청에 따라 담보등기부에 ㉠담보등기를 말소하는 취지(다만 담보등기의 일부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말소등기의 대상), ㉡말소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접수번호, ㉣접수연월일 등을 제공해야 한다(동법50조, 예규 1459호5조 별표 제2호 양식 제5호 제11호 참조). 모든 말소등기는 주등기로 실행되므로(규칙116조), 위 말소등기도 말소목적이 주등기건 부기등기건 모두 주등기로 실행되며(법57조), 설정등기를 전부말소하면 등기부폐쇄다(동규칙43조).

④延長 ; 담보권(동산, 채권)의 존속기간은 5년 이내지만 갱신할 수 있는데, 기간갱신을 하려면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가 기간만료 전에 연장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그 연장등기신청에는 ㉔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취지, ㉕연장 후의 존속기간, ㉖접수번호, ㉗접수연월일을 제공해야 하며(동법49조), 등기원인은 “존속기간 갱신”이다(예규1459호5조 별표 제2호 양식 제6호 제12호 참조). 위 연장등기는 변경등기의 일종이므로 부기등기로 실행된다(동법57조, 법52조5호).

## II. 상호신설등기

### 1. 신청서 기재사항

등기예규1446호(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12조 별지 제1호 양식인 상호신설등기신청서에는 ①등기목적(상호신설) ②등기의 사유(동산담보권설정을 위함)와, 상호등기의 등기사항(상업등기법31조)인 ③상호, ④영업의 종류, ⑤영업소, ⑥상호사용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첨부서류를 적으면 된다.

### 2. 첨부서류

첨부서류에는 ①상인의 소명(사업자등록증 사본), ②상호사용자의 주민등록표초본(상업등기규칙59조), ③인감신고서(상업등기법24조 ;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 ④등록면허세 영수증(금4만5천원과 그20%의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28조1항7호, 151조1항2호), ⑤등기신청수수료(금6천원 ; 등수칙5조의3 제2항), ⑥위임장 등이고, 별도로 소장인이 아닌 증명첨부는 필요 없다.

# 동산담보법

2012. 6. 11. 시행(법률10629호)

2012.7.2. 申鉉基 整理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약정"은 양도담보 등 명목을 묻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2. "동산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

3. "채권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여러 개의 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

4. "지식재산권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등 지식재산권[법률에 따라 질권(質權)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목적으로 그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담보권을 말한다.

5. "담보권설정자"는 이 법에 따라 동산·채권·지식재산권에 담보권을 설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동산·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상사법인, 민법법인, 특별법에 따른 법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6. "담보권자"는 이 법에 따라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7. "담보등기"는 이 법에 따라 동산·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등기를 말한다.

8. "담보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담보권설정자별로 저장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사항을 기록·보존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하고, 동산담보등기부와 채권담보등기부로 구분한다.

9. "채무자 등"은 채무자, 담보목적물의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담보목적

물의 제3취득자를 말한다.

10. "이해관계인"은 채무자 등과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자로서 담보등기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그 권리를 증명한 자, 압류 및 가압류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正本)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말한다.

11. "등기필정보"는 담보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등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 제2장 동산담보권

제3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 ①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이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②여러 개의 동산(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이더라도 목적물의 종류, 보관장소, 수량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없다.

1.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자동차·항공기·소형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기업재산, 그 밖에 다른 법률로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

2.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

3. 무기명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제4조(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근담보권) ①동산담보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6조(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 의무)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1.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2.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

제7조(담보등기의 효력) ①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②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③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인도(민법에 규정된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포함)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先後)에 따른다.

제8조(동산담보권의 내용) 담보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동산담보권의 불가분성) 담보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동산담보권 효력의 범위)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從物)에 미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과실에 대한 효력)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또는 제25조제2항의 인도 청구가 있는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果實)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제12조(피담보채권의 범위) 동산담보권은 원본(原本), 이자, 위약금, 담보권 실행의 비용, 담보목적물의 보존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담보목적물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다만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13조(동산담보권의 양도)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물상대위) 동산담보권은 담보목적물의 매각, 임대,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15조(담보목적물이 아닌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만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은 담보목적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채권자는 담보권자에게 그 배당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설정자

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동산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민법」의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제17조(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및 담보목적물의 보충) ①담보권설정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담보목적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약정에 따라 전자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담보권설정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담보목적물의 가액(價額)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담보권설정자에게 그 원상회복 또는 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그 담보목적물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민법203조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실행하고 취득한 대가에서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제19조(담보목적물 반환청구권) ①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담보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할 권원(權原)이 있거나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반환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담보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0조(담보목적물의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동산담보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동산담보권의 실행방법) ①담보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선순위권리자(담보등기부에 등기되어 있거나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①제21조1항에 따른 경매절차는 민사집행법264조, 271조, 272조를 준용한다.

②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경매절차는 압류에 의하

여 개시한다.

제23조(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절차) ①제21조2항에 따라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동산담보권 실행의 방법을 채무자 등과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과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한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통지에는 피담보채권의 금액,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담보목적물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이하 "매각대금 등"이라 한다)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목적물에 선순위의 동산담보권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 선순위의 동산담보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④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직접 변제충당 등의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1. 담보목적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 또는 청산금이 없는 경우 제1항의 기간이 지나기 전

2.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담보권자가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담보목적물 취득자 등의 지위) 제21조2항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권자나 매수인이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담보권자의 권리와 그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는 소멸한다.

제25조(담보목적물의 점유) ①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다만, 선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 등에게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담보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과실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그 과실을 경매하거나 그 과실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그 과실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26조(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①후순위권리자는 제23조3항에 따라 채무자 등이 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그 순위에 따라 청산금이 지급될 때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담보권자는 후순위권리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21조2항에 따른 동산담보권 실행의 경우에 후순위권리자는 제23조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전까지 담보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되기 전에는 제23조제1항의 기간에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③후순위권리자는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그 채권의 명세와 증서를 담보권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④담보권자가 3항의 채권 명세와 증서를 받고 후순위권리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채무자 등에 대한 청산금 지급채무가 소멸한다.

⑤1항의 권리행사를 막으려는 자는 청산금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해야 한다.

제27조(매각대금 등의 공탁) ①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경우 또는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 또는 상호등기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권자는 공탁사실을 즉시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거나 그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후에 제1항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을 공탁한 경우에는 채무자 등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것으로 본다.

③담보권자는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제28조(변제와 실행 중단) ①동산담보권의 실행의 경우에 채무자 등은 제23조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까지 피담보채무액을 담보권자에게 지급하고 담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의 실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동산담보권의 실행을 중지함으로써 담보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채무자 등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9조(공동담보와 배당, 후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여러 개의 담보목적물에 동산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당할 때에는 각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제1항의 담보목적물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경매된 동산의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담보권자가 다른 담보목적물의 동산담보권 실행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담보권자를 대위(代位)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담보권자가 제21조2항에 따라 동산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각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3조2항에 따른 통지에 명시된 각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제30조(이해관계인의 가처분신청 등) ①이해관계인은 담보권자가 위법하게 동산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 또는 상호등기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21조2항에 따른 동산담보권 실행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집행은 일시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담보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③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라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1조(동산담보권 실행에 관한 약정) ①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는 이 법에서 정한 실행절차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1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통지 후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통지 없이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하거나 직접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②제1항 본문의 약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32조(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 이 법에 따라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민법249조부터 제2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준용규정) 동산담보권은 민법331조와 제369조를 준용한다.

### 제3장 채권담보권

제34조(채권담보권의 목적) ①법인 등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②여러 개의 채권(채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이더라도 채권의 종류, 발생 원인, 발생 연월일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제35조(담보등기의 효력) ①약정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지명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설정자(채권담보권 양도의 경우에는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말한다)는 제3채무자에게 제52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349조 또는 제450조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 또는 담보의 목적인 채권의 양수인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④제2항의 통지, 승낙에 관하여는 민법451조 및 제452조를 준용한다.

제36조(채권담보권의 실행) ①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한도에서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른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채무자가 변제금액을 공탁한 후에는 채권담보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③담보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실행방법 외에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으로 채권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제37조(준용규정) 채권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산담보권에 관한 제2장과 민법348조 및 제352조를 준용한다.

### 제4장 담보등기

제38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설

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한다.

제39조(관할 등기소) ① 제38조의 등기에 관한 사무(이하 등기사무)는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취급한다.

② 등기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한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1.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담보권설정자가 상업등기법31조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 영업소 소재지

③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등기사무의 처리) ① 등기사무는 등기관이 처리한다.

②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담보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등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등기신청인) ① 담보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관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관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관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42조(등기신청의 방법) 담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청.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전자신청: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

제43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① 담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

서면 등"이라 한다)를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한다.

1.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
3.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등
4.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등
5. 그 밖에 당사자의 특정 등을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 등

②제1항1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또는 전자서명법2조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1. 제47조2항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2.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대리인이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소(법인이거나 조합인 경우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3. 등기관리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및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다만,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4. 등기소의 표시
5. 연월일

제44조(신청수수료)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5조(등기신청의 접수) ①등기신청은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방문신청의 경우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서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이 첨부서면과 들어맞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8. 신청의 내용이 이미 담보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던 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제44조에 따른 신청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7조(등기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담보등기부는 담보목적물인 동산 또는 채권의 등기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담보권설정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담보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또는 명칭 및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가. 담보권설정자가 법인 :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 등록번호
  - 나. 담보권설정자가 상업등기법31조에 따라 상호를 등기한 사람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영업소
2.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3. 담보권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담보권설정자나 채무자 또는 담보권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 다만 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5. 담보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6. 담보등기의 목적물인 동산, 채권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7. 피담보채권액 또는 그 최고액
8.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
9. 담보권의 존속기간
10. 접수번호
11. 접수연월일

제48조(등기필정보의 통지) 등기관이 담보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등기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에게도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 ①이 법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는 제1항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면 그 만료 전에 연장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연장등기를 위하여 담보등기부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취지
2. 연장 후의 존속기간
3. 접수번호
4. 접수연월일

제50조(말소등기) ①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담보약정의 취소, 해제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

2. 담보목적물인 동산이 멸실되거나 채권이 소멸한 경우

3. 그 밖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②제1항의 말소등기를 하기 위하여 담보등기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담보등기를 말소하는 취지. 다만, 담보등기의 일부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말소등기의 대상

2. 말소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3. 접수번호

4. 접수연월일

제51조(등기의 경정 등) ①담보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에 오기(誤記)나 누락(漏落)이 있는 경우 담보권설정자 또는 담보권자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오기나 누락이 등기관이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②담보등기부에 기록된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부나 상호등기부상 상호,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이하 "상호 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 담보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담보등기부의 해당 사항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직권변경을 위하여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부나 상호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등에 대한 변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담보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담보등기부의 열람 및 증명서의 발급) ①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사항을 열람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등기부의 열람 또는 발급의 범위 및 방식, 수수료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3조(이의신청 등) ①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한다.

③제1항의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54조(이의신청 사유의 제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제5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55조(등기관의 조치) ①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등기를 완료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당사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제2항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담보권설정자 및 담보권자

2. 담보권설정자 또는 담보권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그 상대방

제56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 및 제55조3항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제57조(준용규정) 담보등기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 제5장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제58조(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①지식재산권자가 약정에 따라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허원부, 저작권등록부 등 그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공적(公的) 장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등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담보의 목적이 되는 지식재산권은 그 등록부를 관장하는 기관이 동일하여야 하고,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59조(등록의 효력) ①약정에 따른 지식재산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

록을 한 때에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질권의 득실변경을 등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②동일한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담보권 등록과 그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질권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른다.

제60조(지식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 담보권자는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1조(준용규정) 지식재산권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산담보권에 관한 제2장과 민법352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1조2항과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장 보칙

제62조(등기필정보의 안전 확보) ①등기관은 취급하는 등기필정보의 누설, 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와 그 밖에 등기필정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등기관과 그 밖에 등기소에서 등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하여 담보등기부에 불실등기(不實登記)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대법원규칙)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7장 벌칙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2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제62조3항을 위반하여 담보등기부에 불실등기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 사람
3.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제2호의 목적으로 보관한 사람

# 동산담보규칙

2012. 6. 11. 시행(대법원규칙2368호)

2012.7.2. 申鉉基 整理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산담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보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①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전자서명법2조1호의 전자문서 포함)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또는 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

제3조(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지원, 담보등기부의 보관·관리 및 등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등기정보중앙관리소(“중앙관리소”)를 둔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에 전산운영책임관을 두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의 출입자 및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의 신원을 관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4조(외국법인의 관할) 담보권설정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1.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한 경우 : 영업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2.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제5조(관할의 변경) ①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으로 담보등기의 관할 등기소가 변경된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기를 마친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는 지체 없이 담보등기의 종전 관할 등기소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상업등기법31조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의 영업소의 이전으로 담보등기의 관할 등기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

여 그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등기정보자료(이하 “등기기록”이라 한다)의 처리 권한을 새로운 관할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등기관의 식별부호 기록) 법40조3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조(등기관 업무처리의 제한) ①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배우자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배우자등이 아닌 성년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배우자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제2항의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업무처리가 제한되는 사유
3. 등기의 목적
4.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5. 참여인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제3장 담보등기부 등

#### 제1절 담보등기부와 부속서류

제8조(담보등기부의 보관) ① 보등기부는 중앙관리소에서 보관한다.

② 폐쇄담보등기부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9조(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① 등기관이 전쟁·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기소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제44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송부명령 또는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촉탁과 관계가 있는 부분만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출력한 후 인증하여 송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제10조(등기고유번호 등)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담보권설정자마다 등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담보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담보약정마다 등기일련

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등기기록의 양식) ① 등기기록에는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담보권설정자부를 두고, 담보약정별로 담보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담보권부와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담보목적물부를 둔다.

② 동산담보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양식, 채권담보등기기록은 별지 제3호 및 제4호 양식에 따른다.

제12조(등기부부분자료의 작성과 보관)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부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기부부분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부분자료는 담보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담보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① 담보등기부(폐쇄담보등기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담보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제12조의 등기부부분자료에 의하여 그 등기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담보등기부를 복구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없이 그 경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① 법42조2호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42조2호에 따른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그 취하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장된 정보는 중앙관리소에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④ 제3항의 보존기간이 종료된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삭제한다.

## 제2절 담보등기에 관한 장부

제15조(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담보등기신청서 접수장
2. 기타 문서 접수장
3. 결정원본 편철장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8. 각종 통지부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11.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②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16조(접수장) ①담보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접수연월일, 접수시각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기신청수수료

②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담보등기신청서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신청인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제17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참여조서, 확인조서, 취하서 그 밖의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8조(각종 통지부) 각종 통지부에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통지사항, 통지를 받을 자 및 통지서를 발송하는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제19조(장부의 보존기간) ①등기소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담보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 기타 문서 접수장 : 10년
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반환된 날부터 5년

8. 각종 통지부 : 1년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 1년

②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보존기간이 종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 제4장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제20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①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리인이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등기기록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제21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①법원행정처장은 신청인이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입력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무인발급기는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설치장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는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무인발급기 설치·관리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2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①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기록의 열람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전산운영책임관이 그 업

무를 담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발급과 열람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3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 ①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동산담보등기 및 채권담보등기별로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하여는 제1호로 한정한다.

1. 하나의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전부를 기재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 제1호의 사항 중 현재 유효한 사항만을 기재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다만, 해당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전부가 말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호의 사항 중 담보목적물에 관하여는 특정한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항만을 기재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4. 제1호의 사항 중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개요사항 또는 해당 법인·상호 등기를 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을 기재한 “등기사항개요증명서”

②제1항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기사항증명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에 한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담보권설정자
2. 담보권자
3. 채무자
4. 담보권설정 후 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담보목적물인 채권을 양수한 사람
5. 담보권설정 후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질권이나 그 밖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
6.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
7. 그 밖에 당해 담보등기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
8. 위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의 파산관재인 등 관리처분권을 갖는 사람

제24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①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를 명시하고, 등기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기록하며, 발급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적은 후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등기사항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발급한다.

③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다만,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25조(열람의 방법) ①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②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방법에 따른다.

③제23조1항1호부터 제3호의 증명사항에 해당하는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제23조2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에 한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등기사항의 일부 공시제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게 할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담보권설정자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방법 및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제5장 등기절차

### 제1절 통칙

제27조(등기의 동시신청) ①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와 함께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할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서면등”이라 한다)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중 1건의 신청에 이를 제출 또는 송신하면 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다른 각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제2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해 부과된 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의무사항을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제29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등) ①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담보권설정자(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또는 등기관리자(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의 특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등을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한다.

1.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관리자가 자연인인 경우

가.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관리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49조1항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등

나.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및 영업소를 증명하는 상업등기법10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면등

2.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관리자가 법인(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상업등기법10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면등

3.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관리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가.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한 경우 :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법인등록번호 및 국내의 영업소나 사무소를 증명하는 상업등기법10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면등

나.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증명하는 서면

2) 부동산등기법49조1항3호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등

3) 국내에서의 대표자와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등

②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하는 서면등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한다.

제30조(등기신청정보의 기록) 법45조1항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란 제10조에 따라 담보약정별로 부여된 등기일련번호를 말한다. 다만 담보권설정등기와 담보권설정자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등기신청의 취하) ①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취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법42조1호의 방문신청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

2. 법42조2호의 전자신청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

제32조(등기관의 조사) ①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법46조 단서의 보정 요구는 신청인에게 말로 하거나, 전화, 팩시밀리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33조(등기의 방법) ①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일련번호를 기록한 다음 담보권부에 등기목적과 법47조2항 각 호(제1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기록하고, 담보목적물부에 담보목적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 등기기록을 개설한 후 담보권설정자부에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한 법47조2항1호 및 제4호의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본문에 따라 담보권부에 접수연월일을 기록할 때에는 그 접수시각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③변경, 경정 또는 연장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변경, 경정 또는 연장된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말소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의 등기사항) 법47조2항4호 단서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외국법인의 국내에서의 대표자와 그 주소를 말한다.

제35조(동산 및 채권의 특정을 위한 등기사항) ①등기기록에는 담보목적물인 동산 또는 채권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담보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가. 동산의 특성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동산의 종류 및 동산의 제조번호 또는 제품번호 등 다른 동산과 구별할 수 있는 정보

나. 동산의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동산의 종류 및 동산의 보관장소의 소재지. 다만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체를 담보목적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담보목적물이 채권인 경우

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채권의 종류

나.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또는 그 시기와 종기

다.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라.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담보권설정 당시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나목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는 다수의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담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에 따라 채무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 각호 이외에도 해당 동산의 명칭, 채권의 변제기, 채권액의 하한

그 밖에 해당 동산 또는 채권의 특정에 유익한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제36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①담보등기부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변경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

②담보등기부에 기록된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부나 상호등기부상 상호,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변경되어 법51조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담보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담보등기부의 해당 사항을 직권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37조(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①법2조11호의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등기필정보는 담보권설정자(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또는 등기명의인별로 정한다.

제38조(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①등기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한다.

1. 방문신청의 경우 : 등기필정보를 적은 서면(이하 “등기필정보통지서”라 한다)을 교부하는 방법. 다만, 신청인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대법원예규에 따라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한다.

2. 전자신청의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

②제1항에 따라 등기필정보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아야 할 사람 외의 사람에게 등기필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①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정보를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한다.

②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법인의 대표자나 지배인이 신청한 경우는 그 대표자나 지배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제40조(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아니한다.

1.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를 포함한다)이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관리자인 경우

3. 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수신이 가능할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수신하지 않은 경우

4.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자가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5. 법41조3항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경우
6. 채권자가 민법404조에 따라 등기관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제41조(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①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고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2. 신고정보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③제2항에 따라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때에는 대법원예규에 따라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제2항제2호의 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등기관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가 있는 경우에 해당 등기필정보를 실효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①법43조2항3호 본문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하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등의 사본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확인서면등”이라 한다)를 등기소에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한다.

④자격자대리인이 제3항의 확인서면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43조(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 ①담보권설정등기를 전부 말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때에는 담보권설정자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폐쇄한 등기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

④ 폐쇄한 등기기록을 부활하는 때에는 담보권설정자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기록을 폐쇄한 뜻과 그 연월일을 말소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 제2절 방문신청

제44조(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① 법42조1호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한다. 다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 합동법인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 수만큼의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자격자대리인이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면 지방법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소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법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5조(인감증명의 제출)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1.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 담보권설정자인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의 상업등기법11조에 따른 인감증명

2. 담보권이전·연장·말소·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법12조 또는 상업등기법11조에 따른 인감증명. 다만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서나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발행일 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47조(첨부서면 원본의 환부 청구)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1. 등기신청위임장, 제42조3항의 확인서면등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
2.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

제48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①방문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개수 이상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를 방문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 중 담보목적물에 대한 정보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목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정보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입력·제출하되, 그 신청정보 중 담보목적물에 대한 정보는 따로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49조(신청서의 접수) ①등기신청서를 받은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수연월일과 접수시각,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등기일련번호(담보권설정등기와 담보권설정자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제외한다),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액과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서에 접수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②등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그 신청서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3절 전자신청

제50조(전자신청의 방법) ①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6조,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

②제1항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43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고, 이 때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개수 이상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 중 담보목적물에 대한 정보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목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신청정보 중 담보목적물에 대한 정보는 따로 등기소에 송신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문서작성자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1. 개인 : 「전자서명법」의 공인인증서
2. 법인 :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3. 관공서 :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

제51조(사용자등록) ①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함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제3항의 서면 외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제53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①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해지의 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③등기소를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54조(사용자등록정보의 변경 등) ①사용자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제51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 제6장 담보권의 실행

제55조(민사소송규칙 등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동산·채권 담보권의 실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규칙」 및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장 보칙

제56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담보등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이 규칙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21조, 제22조, 제31조2항2호, 제38조1항2호, 제41조2항1호 및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기부 양식 ; 동산담보등기에서 등기기록의 양식(제11조)내용에는 부동산등기기록과 달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없고, ①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②담보권에 관한 사항, ③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이 있을 뿐이다(별지 제1호~ 제4호 양식 參照).

## 등기예규1458호

###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2.7.2. 申鉉基 整理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동산·채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보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담보등기에 사용할 문자는 이 예규에 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등기예규1187호(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를 준용하고, 담보권설정자의 상호와 상호등기를 한 사람의 성명의 등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는 등기예규1455호(상업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제3조(제조번호 등의 등기에 사용할 문자) ①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중 제조번호 또는 제품번호 등 개별동산에 부여된 표시 및 동산 또는 채권을 특정하는 데 유익한 사항으로서 중량, 규격, 재질, 증서번호 등(제조번호 등)의 등기는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 외에 로마자 또는 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조번호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로마자와 부호는 다음과 같다.

1. 로마자 :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2. 부호 : 「#」(샤프), 「&」(앰퍼스앤드), 「()」(소괄호), 「-」(붙임표), 「[]」(대괄호), 「:」(쌍점), 「"」(작은따옴표), 「,」(반점), 「.」(온점), 「/」(빗금), 「·」(가운뎃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문자는 그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4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 담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서면 등)를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
3.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등
4.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등
5. 담보권설정자(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또는 등기권리자(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의 특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면 등

가.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관리자가 자연인인 경우

1)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관리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49조1항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등

2)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및 영업소를 증명하는 상업등기법10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면 등

나.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관리자가 법인(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상업등기법10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면 등

다.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관리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1)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한 경우 :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법인등록번호 및 국내의 영업소나 사무소를 증명하는 상업등기법10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면 등

2)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

나)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등

다) 국내에서의 대표자와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

제5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①동산·채권의 담보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 제15호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로 한다.

②신청서는 간결하게 적어야 한다.

③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또는 전자서명법2조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1.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또는 명칭, 등기고유번호(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 다만 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대신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나. 담보권설정자가 상업등기법31조에 따라 상호를 등기한 사람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영업소(상호 또는 영업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중 일부만 적을 수 있다). 다만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2.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

된 사무소를 말한다)

3. 담보권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

4. 담보권설정자나 채무자 또는 담보권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중 일부만 적을 수 있다). 다만 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에서의 대표자와 그 주소를 적어야 한다.

5. 등기일련번호(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를 제외한다)

6. 담보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7. 등기의 목적

8. 담보등기의 목적물인 동산, 채권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6조에 정한 사항. 다만, 담보목적물에 관한 정보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이하 '인터넷등기소'라 한다)에 목록으로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출 또는 송신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따로 적지 아니한다.

9. 피담보채권액 또는 그 최고액

10. 법10조 단서 또는 법12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

11. 담보권의 존속기간

12.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대리인이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주소(법인이나 조합인 경우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13. 등기관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및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다만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14. 등록면허세액

15. 등기신청수수료액

16. 등기소의 표시

17. 신청연월일

④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적어야 한다.

⑤담보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⑥채권일부의 양도나 대위변제로 인한 담보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나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제6조(동산 및 채권의 특정을 위해 신청서에 적어야 할 등기사항) ①담보목

적물인 동산 또는 채권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담보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가. 동산의 특성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동산의 종류 및 동산의 제조번호, 제품번호 등 개별동산에 부여된 표시

나. 동산의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동산의 종류 및 동산의 보관장소의 구체적인 소재지(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건물의 경우 동·호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다. 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일련번호

2. 담보목적물이 채권인 경우

가. 별표 제1호에 따른 채권의 종류

나.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또는 그 시기와 종기

다.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인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나머지 인원수를 적어야 한다.

라.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채무자 중 1인의 성명 및 주소와 나머지 인원수를 적어야 한다.

마.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일련번호

②제1항2호 라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지 않을 수 있다.

1.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담보권설정 당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담보권설정 당시 이미 발생한 채권과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함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또는 그 시기와 종기로 특정할 수 있는 다수의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담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제1항 각 호 이외에도 동산을 특정하는 데 유익한 사항으로서 동산의 명칭, 크기, 중량, 재질, 제조일, 색상, 형태, 제조자, 보관장소의 명칭, 점유자 등을 적을 수 있고, 채권을 특정하는 데 유익한 사항으로서 채권의 변제기, 채권액, 증서번호 등을 적을 수 있다. 다만 주관적 감정이나 가치판단, 기타 동산 또는 채권의 특정과 무관한 사항은 적을 수 없다.

제7조(방문신청서 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①신청서나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자획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 적은 문자의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게 글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③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관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

제8조(등기의 동시신청) ①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담보약정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첨부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①30개 이상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의 방문신청은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야 하고, 담보목적물에 관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인터넷등기소에 미리 마련한 양식에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작성한 목록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따로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신청인은 목록에 입력된 담보목적물에 관한 정보가 계약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목록에 입력된 정보가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력된 정보대로 등기한다.

제10조(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①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자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②전자신청을 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자격자대리인은 미리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동산담보규칙 51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등록) ①동산담보규칙 51조의 사용자등록에 관하여는 등기에 규1391호(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를 준용한다.

②부동산등기규칙68조 또는 상업등기법18조2항과 상업등기규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동산담보규칙51조의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사용자인증)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1.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 공인인증서정보 및 사용자등록번호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 전자증명서정보
3. 자격자대리인의 경우 : 공인인증서정보 및 사용자등록번호

제13조(전자신청의 방법) ①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후 "인터넷등기전자신청"을 선택하여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30개 이상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에 관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인터넷등기소에 미리 마련한 양식에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작성한 목록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따로 등기소에 송신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④담보권설정등기를 전자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에 대하여 이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개인공인인증서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할 수 있다.

1.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등기원인증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기유형에 한한다) 및 행정정보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2.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담보권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다만 제2항에 따라 목록으로 작성해야 하는 담보목적물에 관한 첨부정보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및 그 인감증명서는 제외한다.

⑤신청정보는 "인터넷등기전자신청"시스템이 안내하는 순서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⑥첨부정보 중 법인등기부정보와 같이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그 표시만 하고 첨부를 생략한다.

⑦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36조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한다.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

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만 그 비용을 면제한다.

⑧작성명의인이 있는 전자문서를 첨부할 경우 그 전자문서는 PDF 파일 형식의 전자문서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1. 작성명의인이 개인인 경우 : 공인인증서정보
2. 작성명의인이 관공서인 경우 : 행정전자서명정보
3. 작성명의인이 법인인 경우 : 전자증명서정보

⑨동산담보규칙45조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공인인증서정보(법인의 경우에는 '전자증명서정보'를 말한다)를 송신한 때에는 인감증명서정보의 송신을 요하지 않는다.

⑩전자신청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등기예규1422호(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를 준용한다.

제14조(준용규정) 담보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부칙 ; 이 예규는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자신청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의 별표 제2호(양식목록)

1	동산근담보권설정등기신청
2	채권근담보권설정등기신청
3	근담보권이전등기신청
4	근담보권변경등기신청
5	근담보권말소등기신청
6	근담보권연장등기신청
7	동산담보권설정등기신청
8	채권담보권설정등기신청
9	담보권이전등기신청
10	담보권변경등기신청
11	담보권말소등기신청
12	담보권연장등기신청
13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14	기타의 등기신청
15	인터넷등기소에서 담보목적물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송신하는 경우의 등기신청

동산근담보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시 분 초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근담보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근담보권 설정				
채 권 최 고 액		금 원				
존 속 기 간						
채 무 자						
약 정						
담 보 권 자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근담보권설정계약서	통	<기 타>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인감증명서	통	
1. 주민등록등(초)본	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통	
1. 위임장	통	
년    월    일		
위 신청인	① (전화:    )	
	② (전화: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1. 담보권설정자에 대하여 최초로 동산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 설정자에 관한 사항란에 등기고유번호를 적지 않고,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도 적지 않습니다.
2.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첨부합니다.



채권근담보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시	월 분	일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근담보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근담보권 설정		
채 권 최 고 액	금		원
존 속 기 간			
채 무 자			
약 정			
담 보 권 자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근담보권설정계약서	통	〈기 타〉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인감증명서	통	
1. 주민등록등(초)본	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통	
1. 위임장	통	
년 월 일		
위 신청인	① (전화: )	
	② (전화: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1. 담보권설정자에 대하여 최초로 채권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 설정자에 관한 사항란에 등기고유번호를 적지 않고,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도 적지 않습니다.
2.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첨부합니다.



근담보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 시	월 분	일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기일련번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학정채권양도			
등 기 의 목 적					근담보권 이전			
이전할 근담보권								
구분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 기 의 무 자								
등 기 권 리 자								

등록면허세	금	원
지방교육세	금	원
세액합계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채권양도계약서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 위임장	통 통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전화:    )
	(인)	(전화: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1.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첨부합니다.

근담보권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시 분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기일련번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변경계약

등기의 목적

근담보권 변경

변경할 사항

구분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  
기  
의  
무  
자

등  
기  
권  
리  
자

등록면허세	금	원
지방교육세	금	원
세액합계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근담보권변경계약서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 위임장	통 통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① (전화:    )	
	② (전화: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1.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첨부합니다.

근담보권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 시	월 분	일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계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기일련번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해지	
등 기 의 목 적		근담보권 말소	
말 소 할 등 기			
구분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담 보 권 자			

등록면허세	금	원
지방교육세	금	원
세액합계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담보권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해지증서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 위임장	통 통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① (전화: )	
	② (전화: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1.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첨부합니다.

근담보권연장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시 분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기일련번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존속기간 갱신

등 기 의 목 적

근담보권 존속기간 연장

연장후의 존속기간

구분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담 보 권 자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근담보권변경계약서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 위임장	통 통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① (전화:    ) ② (전화: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1.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첨부합니다.

동산담보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시	월 분	일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체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담보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담보권 설정

채 권 액

금 원

존 속 기 간

채 무 자

약 정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담  
보  
권  
자

등록면허세	금	원
지방교육세	금	원
세액합계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담보권설정계약서	통	〈기 타〉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인감증명서	통	
1. 주민등록등(초)본	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통	
1. 위임장	통	
년 월 일		
위 신청인	① (전화: )	
	② (전화: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1. 담보권설정자에 대하여 최초로 동산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 설정자에 관한 사항란에 등기고유번호를 적지 않고,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도 적지 않습니다.
2.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첨부합니다.



채권담보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시 분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담보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담보권 설정		
채 권 액	금		원
존 속 기 간			
채 무 자			
약 정			
담 보 권 자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록면허세	금	원
지방교육세	금	원
세액합계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담보권설정계약서	통	〈기 타〉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인감증명서	통	
1. 주민등록등(초)본	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통	
1. 위임장	통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전화: )
	인	(전화: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1. 담보권설정자에 대하여 최초로 채권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 설정자에 관한 사항란에 등기고유번호를 적지 않고,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도 적지 않습니다.
2.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첨부합니다.



담보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 시	월 분	일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기일련번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채권양도	
등기의 목적		담보권 이전	
이전할 담보권			
구분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 기 의 무 자			
등 기 권 리 자			

등록면허세	금	원
지방교육세	금	원
세액합계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채권양도계약서	통	〈기 타〉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	통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전화:      )
	인	(전화: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1.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첨부합니다.

담보권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 시 월 분 일 제 호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기일련번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변경계약			
등기의 목적			담보권 변경			
변경할 사항						
구분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 기 의 무 자						
등 기 권 리 자						

등록면허세	금	원
지방교육세	금	원
세액합계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담보권변경계약서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 위임장	통 통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① (전화:    )	
	② (전화: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1.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첨부합니다.

담보권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 시	월 분	일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기일련번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해지	
등 기 의 목 적		담보권 말소	
말 소 할 등 기			
구분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담 보 권 자			

등록면허세	금	원
지방교육세	금	원
세액합계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담보권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해지증서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 위임장	통 통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① (전화: ) ② (전화: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1.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첨부합니다.

담보권연장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기일련번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존속기간 갱신	
등 기 의 목 적		담보권 존속기간 연장	
연장후의 존속기간			
구분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담 보 권 자			

등록면허세	금	원
지방교육세	금	원
세액합계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담보권변경계약서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 위임장	통 통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① (전화: )	
	② (전화: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1.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첨부합니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시 분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기일련번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등 기 의 목 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변 경 할 사 항

구분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신  
청  
인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첨 부 서 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위임장	통 통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①	(전화: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1.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첨부합니다.

등기신청							
접 수	년 시 월 분	일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기 일련 번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등 기 의 목 적							
구분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 기 의 무 자							
등 기 권 리 자							

등록면허세	금	원
지방교육세	금	원
세액합계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000000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 위임장	통 통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① (전화:        )	
	② (전화: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1.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첨부합니다.

**동산근담보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시	월 분	일 호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근담보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근담보권 설정		
채 권 최 고 액	금 원		
존 속 기 간			
채 무 자			
약 정			
담 보 권 자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담보목적물 목록번호 :		-	
(신청인은 목록에 입력된 담보목적물에 관한 정보가 계약의 내용과 틀림 없음을 확인하였음)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근담보권설정계약서	통	〈기 타〉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인감증명서	통	
1. 주민등록등(초)본	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통	
1. 위임장	통	
년 월 일		
위 신청인	① (전화: )	
	② (전화: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1. 담보권설정자에 대하여 최초로 동산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 설정자에 관한 사항란에 등기고유번호를 적지 않고,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도 적지 않습니다.
2.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첨부합니다.

# 근담보권설정계약서

2012.7.2. 申鉉基 作成

(甲)채권자 겸  
근담보권자 ; 동 채 권 (인) (451004-1 )  
주소, 전화번호

(乙)채무자 겸  
담보권설정자 ; 설 정 자 (인) ( - )  
주소, 전화번호

채권최고액 ; 금 일억오천만원정(W150,000,000)

담보목적물 ; 별첨과 같음

채권최고액을 담보하려고 甲乙은 담보목적물에 순위1번으로 다음내용의 포괄 근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담보등기를 실행한다.

제1조(채권최고액) 乙이 제공하는 위 담보목적물이 甲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위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한다.

제2조(포괄채무) 위는 채무자의 모든 채무(발생된 현재채무와 채무기초가 성립된 계약에 따른 장래채무 등)가 포함되는 포괄채무다.

제3조(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일정요건(①약정된 의무이행을 단 한번만이라도 지체, ②다른 채권자로부터 담보물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 ③채무자의 도산절차진행 등)이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채무전액을 완재해야 한다.

제4조(연대채무) 보증인(채무자 외의 설정자 포함)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이 계약의 채임이 있고, 담보권의 무효(담보물의 하자 포함)에도 연대보증의 책임이 있다.(연대채무아닌 물상보증이면 “채권최고액을 넘는 채무액은 채무자만의 부담이지 설정자의 부담은 없고, 설정자는 담보물로만 부담이어서 담보물 외 설정자의 개인재산으로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임)

제5조(담보권효력) 위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이지만 갱신할 수 있으며, 담보권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제6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위 담보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담보권실행비용, 담보목적물의 보존비용, 손해배상(채무불이행 또는 담보목적물의 흠으로 인한 손해)채권을 담보한다.

제7조(관할) 이 담보권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이다.

2012년 6월 11일

## 담보권설정계약서

2012.7.2. 申鉉基 作成

(甲)채권자 겸  
담보권자 ; 동 채 권 (인) (451004-1 )  
주소, 전화번호

(乙)채무자 겸  
담보권설정자 ; 설 정 자 (인) ( - )  
주소, 전화번호

채권액 ; 금 일억오천만원정(W150,000,000)

담보목적물 ; 별첨과 같음

위 채권액을 담보하려고 甲乙은 담보목적물에 순위 제1번으로 다음내용의 담보권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담보등기를 실행하기로 한다.

제1조(피담보채권) 乙이 제공하는 위 담보목적물이 甲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乙이 甲으로부터 0년0월0일 빌린 돈 원금1억5천만원과, 이자, 위약금, 담보권실행비용, 담보목적물의 보존비용, 손해배상(채무불이행 또는 담보목적물의 흠으로 인한 손해)채권을 담보하는데, 이자는 월2%로 매월20일 지급해야 하고, 변제기는 0년0월0일이다.

제2조(담보권효력) 위 담보권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제3조(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일정요건(①약정된 의무이행을 단 한번만이라도 지체, ②다른 채권자로부터 담보물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 ③채무자의 도산절차진행 등)이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채무전액을 완재해야 한다.

제4조(연대채무) 보증인(채무자 외의 설정자 포함)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이 계약의 채임이 있고, 담보권의 무효(담보물의 하자 포함)에도 연대보증의 책임이 있다.(연대채무아닌 물상보증이면 “채권최고액을 넘는 채무액은 채무자만의 부담이지 설정자의 부담은 없고, 설정자는 담보물로만 부담이어서 담보물 외 설정자의 개인재산으로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임)

제5조(관할) 이 담보권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이다.

2012년 6월 11일

## (별첨) 담보목적물의 예시(특정)

2012.7.2. 申鉉基 作成

(동법3조, 34조, 동규칙35조, 예규1458호6조 參照)

※동산담보등기부와 채권담보등기부로 구별되며(동법2조8호), 담보목적물이 동산이건 채권이건 다수이면 각 일련번호를 기재해야 한다(예규1458호6조1항1호 다항, 2호 마항).

### I. 동산(유체동산)담보등기부

#### 1. 특성에 따른 특정

①동산의 종류 ; 콤팩인, 제조번호(또는 제품번호) ; 제000호

②동산의 종류 ; 트랙터, 제조번호(또는 제품번호) ; 제000호

③동산의 종류 ; 산수화(1970년 김기창 작 크기30호 등록번호000호)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만이 부동산취급이고, 위 농기계(콤바인, 트랙터, 경운기 등)는 유체동산으로 취급된다(본안집행 하 853쪽 參照).

※그림(동양화 등)은 미술등록협회에 등록하면 특정될 수 있다.

#### 2. 보관장소에 따른 특정

①동산의 종류 ; 석등(높이2m), 보관장소 ; 0시 0동 00번지

②동산의 종류 ; 자갈(5만톤), 보관장소 ; 0시 0동 00번지

③동산의 종류 ; 돼지(모돈20마리, 육성돈50마리, 자돈30마리), 보관장소 ; 0시 0동 00번지

### II. 채권(지명채권)담보등기부

①㉠채권의 종류 ; 부동산매매대금, ㉡발생원인 ; 부동산매매, ㉢발생일자 ; 연월일(매매일자), ㉣채권자 ; 아무개, ㉤채무자 ; 아무개

※㉠담보목적물인 채권은 지명채권으로서, 그 종류에는 1)부동산매매대금, 2)동산매매대금, 3)기타매매대금, 4)부동산담보대출, 5)금융기관대출, 6)신용카드대금, 7)기타대여금, 8)임대차보증금반환, 9)차임, 10)공사대금, 11)기타 수급인의 보수, 12)수임료, 13)보관료, 14)지료, 15)전세금반환, 16)보험금, 17)보험료, 18)중개료, 19)운송료(운임), 20)리스료, 21)지식재산권이용료, 22)진료비, 23)서비스이용료, 24)기타 등이 있다(예규1458호6조1항2호 별표 제2호).

㉢발생일자 대신 채권의 시기와 종기를 적을 수 있다.

㉣채권자가 다수이면 담보권설정자의 성명 주소를 적고 인원수만 적는다.

㉤여기서 지명채권의 채무자는 제3채무자의 입장이므로, 다수이면 1인의 성명 주소를 적고 나머지 인원수만 적는다(예규1458호6조1항2호 다항 라항).

